의안번호	제2856호
의 결 연 월 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
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4. 11. 14.

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2856호

제출연월일: 2024. 11. 14.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자연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의 임무에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을 신설하고, 「경상남도 이장·통장 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주민화합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장의 임무에 도우미 역할 신설(안 제2조)
-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

나. 잦은 조례개정 사전 예방 등 업무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특정 수당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 삭제와 불필요한 문구 정비(안 제4조)

다.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사기진작 지원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규정 마련(격년 지원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경상남도 이장·통장 활동 지원 조례」 제3조(지원사업)

나. 예산조치: 2025년 당초예산 반영(31,800천 원)

다. 협　　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특이사항 없음(복지지원과-35646, 2024. 9. 6.)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4-1436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9. 10. ~ 2024. 9. 30.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・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조례　제　　호

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

제4조제1항 중 “원정수당 읍,면공무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활동비 월 60,000원을”을 “활동비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복무활동에”를 “제2조 활동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이장의 건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년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부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 받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이장의 임무) ① (생 략)	제2조(이장의 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,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<조 1032>	②----------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
제4조(실비지급) 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, 원정수당 읍,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	제4조(실비지급) ①---------- ---------- 공무원 ----------.
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 월 60,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.	②---------- 활동비를 ----------.
제6조(사기진작) ①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	제6조(사기진작) ①---------- 제2조 활동에 따른 --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이장의 건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년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붙임 **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**

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소요예산: 31,800천원(도비 20%, 군비 80%)

- 산출근거: 300천원 × 212명(265명의 80%) × 1/2(격년)

※ 직장(배우자 직장 포함) 지원 등으로 인한 미수검자를 20%로 추정하여, 전체 이장 265명의 80%인 212명에 대해 사업비 산출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해당 개정조례안은 도비 보조사업을 통한 관내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.

작성자: 행정과장 김 종 완

참고 **관계법령(발췌)**

❑ 「경상남도 이장·통장 활동 지원 조례」

제3조(지원사업 등) ① 경상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이장·통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
2. 이장·통장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
3. **이장·통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2년에 1회)**
4. 그 밖에 도지사가 이장·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(제3호는 제외한다)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장·통장 연합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